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사업별 예산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(안 별표2)
  - 기한연장 : 2007. 12. 31 → 2008. 12. 31까지
  - 한시정원 : 2명 (7급1명, 8급1명)

### 4. 참고사항

- 경북도 정책기획관 - 213(2007. 1. 5)호의 2007년 총액인건비제 시행 지침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별예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임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의 한시정원 인력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. 12. 31에서 2008. 12. 31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임
-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